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791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오세희·이재관·박용갑

박지원 • 어기구 • 박해철

박희승 • 허성무 • 임호선

정진욱 · 김남근 · 이광희

강준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광고비 부담 등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지역 상권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제조한 상품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소개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실증특례를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매출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해당 사업의 추진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임.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판매하는 지

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0조의3 신설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3(채널의 구성과 운용 특례)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상품(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내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그 계열회사에 속하는 자가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지역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지역채널에서 송신할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이외의 방송구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종합

유선방송사업자가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상품 및 지역상품의 생산·판매자의 범위,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관한 기준·방법과 제2항에 따른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외의 방송구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송신 비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5조의2제1항제7호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한다.

제100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각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제70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70조의3(채널의 구성과 운용특례)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상품(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상품(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상품의 방송구역 내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개와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그 계열회사에 속하는 자가 지역상품의소개와 판매에 관한 지역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제1

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지역채널에서 송신할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이외의 방송구역에서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할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상품 및 지역상품의 생산·판매자의 범위,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관한 기준·방법과 제2항에 따른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이외의 방송구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송신 비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 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

유선방송사업자 · 전광판방송사 업자 · 전송망사업자(이하 "방 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 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 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 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6. (생략)
-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 문편성을 하는 <u>방송채널사용</u> 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 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생략) ② ~ ⑥ (생 략) 第100條(제재조치등) ① ~ ④ 第100條(제재조치등) ① ~ ④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방송채널사용사
업자 또는 제70조의3제1항에
업자 또는 제70조의3제1항에
업자 또는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
업자 또는 제70조의3제1항에
업자 또는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
업자 또는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 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종
업자 또는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 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종
업자 또는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 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종
업자 또는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 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종
업자 또는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 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종
업자 또는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 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종
업자 또는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 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종

- ②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u>사업자</u>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 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 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 · 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 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 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 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 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u>방송채널사용</u>
사업자 및 제70조의3제1항에
<u>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하</u>
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
바소케너지요지어
<u>방송채널사용사업</u>
자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지
역채널을 운용하는 종합유선방
<u> 송사업자</u>

⑥ ~ ⑧ (생 략)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의3. (생 략) <u><신 설></u>

8. ~ 28. (생략)

②·③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	
1. ~ 7의3. (현행과 같음)	
7의4. 제70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 28. (현행과 같음)	
⑦·③ (혀해라 간으)	